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88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재출자 : 2004. 11. 29　　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1. 30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12. 10　　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조성사유

○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·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의 목표액 300백만원(5개년 장기계획으로 조성), 매년 60백만원 적립

○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높은 방법으로 2년이하로 정기예탁

○ 기타재원조성은 이자수입, 기타수익금으로 충당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계획안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여성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고,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,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

○ 2005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0백만원씩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목표금액 300백만원을 달성한 이후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,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등 여성의 복지 증진 사업 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나

○ 향후 저금리에 따른 기금예치 상황 및 관리방법, 기금목표액 300백만원 조성 이후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재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출하여야 하므로 이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며, 현재 기금예치 상황은?

● 답 : 여성발전기금중 50,000천원은 경남은행에 예치당시 변동금리로 4.3% 예치기간은 2년이며, 만기일은 2005. 9. 23이고 나머지 60,000천원은 농협에 예치당시 변동금리로 3.6%, 예치기간은 2년이며, 만기일은 2006. 11. 17입니다.

6. 토　　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4. 12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